

March 25, 2016

##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6. 3.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하며, 공정이용으로서 허용되는 비영리 목적 ‘공연’의 범위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제21조, 제29조 등).

현행 저작권법상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일정한 경우 판매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 공연하는 것이 허용되는데(법 제29조, 시행령 제11조), “음반”은 “음(음성·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이라고만 정의되어 있습니다(제2조 제5호).

그런데 최근 음반 유통 방식이 디지털음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음반’을 CD나 테이프 등 유형의 매체에 한정하여 해석하고, ‘판매용’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는 등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발전한 경우도 있어 관련되는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경우에도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혼란이 있었는데(스타벅스 판결, 하이마트 판결), 대법원은 2015. 12. 10. 현대백화점 사건에서 실시간으로 음원을 받아서 틀어주는 이른바 ‘스트리밍 음악’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음반”의 개념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디지털 음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법 제2조 제5호),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며(법 제21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의 공연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확히 함으로써(법 제29조 제1항), 이에 관한 혼란을 대법원의 위 현대백화점 사건 판결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즉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재생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만이 적용되고 동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2.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하고,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함(안 제35조의3)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3)은 ‘(다른 조문에 명시된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이를 판단할 때에는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즉,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목적이 개별적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를 적용하기 곤란한 다양한 저작물 이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적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의 요건으로 마련되어 있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을 ‘포괄적 공정이용’ 요건으로 두는 것은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저작물 이용목적 및 성격을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으로 수식하는 경우 영리성·비영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이에 한정해서 판단할 우려가 있어, 영리성이 있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배제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정이용 조항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제2항 제1호 중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공정이용의 목적 및 고려사항을 일층 완화하였습니다.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징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상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06조 및 제109조)

현행법상 하나의 음악서비스에 대해 저작권·저작권접권 등 권리별 단체들이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을 별도 징수하고 있어, 이용자는 3개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사용료와 보상금을 각각 지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개정안은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신탁관리단체 또는 보상금 수령단체 중 통합징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징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관이 통합 징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 규정 마련 등(안 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5까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12조).

그런데 이와 같은 저작권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①불법저작물 단속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됨에 따라 단속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②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 및 분쟁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이 저작권 단속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 기능인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립성 및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불법복제물 단속을 주요업무로 하여 설립된 저작권보호센터와는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과 저작권보호센터 기능을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함으로써(제122조의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한국저작권위원회와는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통합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문용호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661 | E-Mail. yhmoon@shinkim.com |
| ●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55 | E-Mail. shim@shinkim.com   |
| ● 류정선 변호사    | TEL. 02 316 1732 | E-Mail. jsryu@shinkim.com  |